

#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일송학원(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)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-232 : 2003.2.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일송학원(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운영 및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없는 경우: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 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관련				지적사항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없음
3. 학교 관련				지적사항없음
계				

붙임 :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감사보고서

2018 년 4 월 25 일

학교법인 일 송 학 원

감 사 권 광 시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1892 호)

감 사 조규형 (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18 년 4 월 25 일

학교법인 일송학원

이 사 장 김대원 (인)

피감사 기관장

2018 년 4 월 25 일

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

총 장 이정국 (인)

# 감 사 보 고 서


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 귀하
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8년 4월 25일


학교법인 일 송 학 원

감 사 권광시 

감 사 조규현 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 명 김갑

성 명 김대훈 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 교비회계-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회계 )

18